

(앞쪽)

사실 확인 조사원 증명서	
발급번호	
성명	
유효기간	
	사 진 (2.5cm×3cm)
위의 사람은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 · · ·	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	직인

60mm × 80mm 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뒤쪽)

주의사항
1.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2. 이 증표는 사실 확인 시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.
3. 이 증표의 소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.